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기술과 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현재 직무역량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,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- 규제와 관련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2(추가 직무역량 표시) ① 주무부장관은 기술·기능의 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추가로 습득한 직무 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다.

② 추가 직무역량의 표시 기준, 절차 및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<u>제25조의2(추가 직무역량 표시)</u> ① <u>주무부장관은 기술·기능의 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추가로 습득한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다.</u> ② <u>추가 직무역량의 표시 기준, 절차 및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88